

국책과제, 국가연구과제의 학생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연구관련 용도에 사용하고 사
적 사용 없음 -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은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본 최근 대법원

2018두56237 판결



조만간 대법원 판결문이 공개되면 판결문까지 붙여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판결이므로 기사에 나온 판결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사안의 개요

- (1) 연구책임자 서울대교수 - 학생인건비 2억6000여만원 중 7000여만원을 공동관리
계좌로 받아서 연구실 운영비, 학술회 참가 항공권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함
- (2) 제재처분 - 7000여만원 사업비 환수 및 3년의 참여제한 처분

2심 판결의 요지 - 제재처분 적법, 공동관리계좌 운영기간이 4년으로 장기이고, 지급된 총 인건비에서 공동관리계좌 운영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환수처분은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이며, 제외처분 역시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요지 - 제재처분 위법, 항소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이유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을 통해 얻게 될 공익보다 해당 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환수처분 및 제외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공동관리된 돈은 대부분 형식적으로는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등록금, 회식비용, 소속 학생연구원들의 학술대회 참가비용, 연구실의 통상의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교수는 이 돈을 개인적·자의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다.

공동관리계좌 운영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그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